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게 자연스럽게 배치함.
-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행정안전부 제공>

●국토해양부령 제44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주방형 불박이 가전제품”을 “불박이 가전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불박이 가구(옷장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 설치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 제5호 중 “쓰레기이송설비”를 “쓰레기이송설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주택의 건설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
- 가. 65세 이상인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기간이자 산정방법(제8조제1항제3호 관련)

기간이자 = 납부한 택지대금 × 납부일부터 제1호에 따른 기간이자 인정기간 × 금리

1. 기간이자 인정기간

구분		인정기간
택지비 비중	30퍼센트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30퍼센트 초과 ~ 40퍼센트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9개월
	40퍼센트 초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4개월

※ 택지비 비중 = 택지 공급가격/ 총분양가격(택지비에 대한 기간이자는 제외한다)

2. 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 0.2 +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 + 3.3퍼센트] × 0.8

※ 정기예금금리 및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제15조제1항 관련)

대항목	세분류	공시내용
1. 택지비(3)	택지공급가격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 밖의 비용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2. 공사비(5)	토 목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 축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그 밖의 공종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3. 간접비(3)	설계비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4. 그 밖의 비용(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의 실제 비용부담을 분양가격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추가선택품목에 불박이 가구를 추가하고,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현재 최장 12개월에서 앞으로는 최장 14개월로 연장하며, 기간이자의 산정 기준 금리도 현재 예금은행 가중평균 기업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의 건설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61개 세분류에서 12개 세분류로 단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